

2016. 11.23.(수) ~
12.16.(금) / 14일간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목 차

1.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8
6.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장성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계획안(계속비 사업) 11
9.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12. 장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13.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장성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5.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6.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7.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8.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21.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2.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3.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25.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
26.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7.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8.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9.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31.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32. 2017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30
33. 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4. 장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32
35.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6. 장성군 지진지패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7. 장성군 희망일자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8.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9.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40.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41.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42.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43.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9

44.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40
45.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46.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7.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48.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2
49.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50.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4
51.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52.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53.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안(계속비사업)	47
5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8
55.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9
56. 201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52
57.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3

심사결과

의안 번호	의안명	의결 일자	의결 결과
1706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07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08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10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11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12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13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14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계획안(계속비사업)	2016. 12. 06.	원안가결
1715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16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17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18	장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19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20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의안 번호	의안명	의결 일자	의결 결과
1723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24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25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26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27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28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30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31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32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3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34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35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36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37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39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의안 번호	의안명	의결 일자	의결 결과
1740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41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61	2017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42	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43	장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44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45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46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47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48	장성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49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50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51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52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의안 번호	의안명	의결 일자	의결 결과
1753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54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55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56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57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58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05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59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60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12. 06.	원안가결
1762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안(계속비사업)	2016. 12. 06.	원안가결
176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자위)	2016. 12. 06.	원안가결
176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건위)	2016. 12. 06.	원안가결
176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 12. 16.	수정가결
1764	201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2016. 12. 16.	원안가결
1767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 12. 16.	원안가결

주요 내용

1.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1. 14.
- 발 의 자 : 김희식, 임동섭 의원
- 제안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처리, 외부 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 군의회 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11조)
 - 직무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함.
 - 외부강의 등의 신고(안 제14조)
 -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군의회 의장이 정하는 금액(3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 군의회 의원은 외부강의 등의 제한 횟수(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법적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2.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1.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및 문구의 명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명예 군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 삭제(제4조)
- 제4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 목적 조항의 약칭 삭제(제1조) 및 다음 조항(제2조)에서 약칭 사용
- 제1조 중 “장성군 명예군민증(이하 ” 명예군민증 “이라 한다)” 약칭 삭제
- 제2조 중 “명예군민증” 을 “장성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 “이라 한다)” 으로 약칭 사용

○ 내용에 맞게 조문의 제목 개정(제2조)

- 제2조 “(명예군민증 수여)” 를 “(대상선정 및 수여절차) “로 개정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3.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1.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따라 상위 법령 범위 초과 조항 삭제 및 조문의 명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조항 삭제
 - 제3조제1호의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목적 조항의 약칭 삭제(제1조) 및 다음 조항(제3조)에서 약칭 사용
 - 제1조 중 “장성군민(이하 ” 군민 “이라 한다)” 과 “장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 공무원 “이라 한다)” 약칭 삭제
 - 제3조 중 “군민” 또는 “공무원” 을 “장성군민(이하” 군민 “이라한다)” 또는 “장성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으로 약칭 사용
- 법적근거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6980호)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4.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1.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사용료 현실화로 활성화

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안 제11조의 별표2)

- 별표2의 2조 시설사용자에게 보험가입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삭제

○ 시설사용료 징수대상 및 사용료 변경(안 제13조의 별표3)

- 별표3 기획전시실 ⇒ 삭제

ROOM 1, 4 사용료 20만원 ⇒ 15만원

ROOM 2, 3 사용료 15만원 ⇒ 8만원

○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안 제15조)

- 납부된 시설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납부된 ~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반환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5.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1.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편의 및 법적안정성을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규정(안 제2조)

-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다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6.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1.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및 조문의 명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

- (현행)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의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개선) 삭제

- (현행) [제22조(계약의 해지)의 2항]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탁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3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선) 삭제
- (현행) [제25조(손해배상)의 2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개선) 삭제
-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7. 장성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1. 16.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따라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및 조문의 명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조항의 약칭을 삭제하고 2조로 이동
 - (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설치 및 관리에 --(생략)
 - (개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에 --(생략)으로 개정
 - (현행) [제2조(위치)] 회관은 장성군 장성읍 청운7길 10에 둔다.
 - (개선) [제2조(위치)] “장성군 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장성군 장성읍 청운7길 10에 둔다. “로 개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
 - (현행) [제6조(사용제한 등)의 2항]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개선) 삭제
 - (현행)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납입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 (개선) “반환하여야 한다.” 로 개정
- 법적근거
 - 「민법」 제 75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8.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계획안(계속비 사업)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품격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 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22,000백만원 【재원 : 국비30%+군비70%】
 - 계속사업비 : 22,000백만원

기 간	사업비(백만원)	내 용
계	22,000	
2016년	500	• 군계획시설(공설운동장) 설계용역
2017년	4,300	• 공설운동장 조성(부지조성 등)
2018년	5,000	• 공설운동장 조성(구조물 설치 등)
2019년	5,500	• 공설운동장 조성(공원 등 조성)
2020년	6,700	• 공설운동장 조성(부대시설 등)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9.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이 변경된 바, 이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출 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을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로 변경
 - 구성(안 제3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조항을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을 없애고,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개정

▪ 법적근거 :

○ 「장애인 복지법」 제13조제2항,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10.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의거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7조제7항)

(현행)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한다

(개정) 해당 규정 삭제

▪ 법적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11.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원대상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호 개정
현행)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 경비 지원
개정)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 경비 지원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12. 장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의거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및 문구의 명확화 등 행정환경 변화
에 따른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 ⇒ 약칭(복지회관) 삭제

○ 위치 및 규모(안 제2조)

- 읍면종합복지회관 약칭 사용 ⇒ 약칭(복지회관) 사용

○ 사용료 반환(안 제16조)

-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반환하여야 한다.
(사유발생조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구체적 명시화)

○ 손해배상(안 제21조) ⇒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준용

○ 기타 착오 항 수정 (제20조제1항, 제25조제2항)

- 제20조제1항 제8조제1항 ~ ⇒ 제20조제1항 제12조제1항 ~
- 제25조제2항 제9조제1항 ~ ⇒ 제25조제2항 제13조제1항 ~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2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13.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의거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및 문구의 명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성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
 - ⇒ (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를 삭제
 - 제7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2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14. 장성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당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수정을 통한 행정의 법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변경

▪ 법적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15.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례명 변경

-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2조(위원회 구성)

- 제목 (위원회 구성)을 (구성)으로
-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변경
- 제4항제3호 중 “풍부한 자” 를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으로 변경

- 제4항제4호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으로 한다.
- 제5항 단서 중 “위원의 임기 3년” 을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변경
- 제2조2(위원의 해촉) 신설
- 제2조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 제3조(심의사항)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으로 변경
- 제4조(회의소집)
 - 단서 중 “소집할 수 있다.” 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로 변경
- 법적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73조, 제7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16.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로 변경됨(2015. 12. 29.)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근거 법령 개정(안 제1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 법적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73조, 제7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17.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및 조문의 명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제138조(포상금의 지급)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제9조제3항은 상위 근거법령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삭제
 - 제2조제1항제1호에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 을 “비정규 계약직 포함 :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으로 개정하고, 제4조제2호 “다만,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를 삭제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18.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의거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및 문구의 명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4조제2항 본문 중 “회계년도” 와 “년” 을 각각 “회계연도” , “연”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를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로 개정
 - 제20조제1항 중 “가장 최근에 제조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로 개정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19.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의거 타 법령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인용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규정하는 것은 불부합하므로 목적 조항의 약칭 규정을 삭제하고 아래 조항에서 약칭을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같음한다는 내용 삭제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20.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회계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군수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배소지 불식(안 제2조제2호)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삭제(안 제4조)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9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21.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 요구에 의거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규정하는 것은 불부합 하므로 목적 조항의 약칭 규정을 삭제하고 아래 조항에서 약칭을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1항에서 위원회 구성 내용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2항의 위원장을 당연직 장성군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개정 및 일부 용어 정리하고, 위원 자격중 제5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7호 신설(안 제2조)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2항에서 위원장이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개정됨에 따라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다는 내용 삭제(안 제3조)
 - 제10조(위원의 해촉)에서 해촉사유(제1호 ~ 제5호)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서 상한금액을 없애고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하고 대상공사 중 수해복구 공사를 추가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22.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토석 채취료의 불합리한 산정 방법으로 인하여 토석 채취 업체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규정 등 규제개혁을 통해 주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토석 채취료 산정 기준 변경(안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 (현행) 생산량 중 용도별(건축용, 공예용, 쇄골재용 등)로 생산 비율이 가장 높은 규격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석 시가 적용
 - (개선)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용도별로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원석 시가 적용
 - 감정평가 의뢰 업체의 선정 범위 확대(안 제66조)
 - (현행) 공유토지의 분필을 위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도록 제한함
 - (개선)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 의뢰 가능
- 법적근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23.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 및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 의뢰대상 확대(안 제17조)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 한글맞춤법에 따른 표준어 사용 및 어려운 용어 순화 등

- 년도, 년도말, 매년도 → 연도, 연도말, 매년(안 제7조, 안 제15조, 안 제25조)

- 관서당경비 → 일상경비(안 제10조)

- ~ 내지 ~ → ~ 부터 ~까지(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34조)

- 다음 각 호의 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안 제16조, 안 제17조)

- 내구년수, 20백만원 → 내용연수, 2천만원(안 제16조)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2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문화관광과)

-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품격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장성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문화관광과)

- 사회인야구 동호회원 증가로 경기장이 필요함에 따라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

○ 장성군 공영주차장 설치 (경제교통과)

- 간선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정체, 교통사고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서비스 제공

▪ 공유재산 관리계획

○ 장성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문화관광과)

(단위 : m²,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적	추정가격	비고
계		94필지 / 1동	54,853 / 2,730	8,000,000	
취득	토지매입	20필지	15,800	2,000,000	
	무상귀속	74필지	39,053	-	
	건물신축	1동	2,730	6,000,000	

○ 장성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문화관광과)

(단위 : m²,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적	추정가격	비고
취득	계	1필지	10,625	1,647,000	
	토지매입	1필지	10,625	1,647,000	

○ 장성군 공영주차장 설치(경제교통과)

(단위 : m²,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적	추정가격	비고
취득	계	7필지	3,273	354,427	
	토지매입	7필지	3,273	354,427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25.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 직종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26.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 규제 개선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민법 개정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 적 (안 제1조, 제2조)

-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약칭 「이하 “군민의 상” 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장성군민의 상 용어가 최초로 나오는 제2조 1항에 약칭조문 추가

○ 결격사유(안 제6조 제1호)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 법적근거

○ 「민법」 제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27.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 규제 개선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약칭 조문 변경 (안 제1조, 제3조)

-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약칭 「이하 “법” 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법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나오는 제3조에 약칭조문 추가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내용 변경(안 제10조 제1항)

- 당초 :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 변경 : 위원장은 군수가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28.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 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반영,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지역보건법」 제18조 → 제23조로 개정
 - 「지역보건법」 제21조 → 제29조로 개정
 - 「지역보건법」 제26조 → 제34조로 개정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
 -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
 - 별표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항목 및 법령 변경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 각각 ‘삭제’
-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29.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으므로, 목적 조항을 제외한

용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정의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

-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 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아 삭제

■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조항의 약칭 삭제 및 정의(안 제2조) 조항의 약칭 사용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 변상책임(안 제5조) 삭제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시설물이나 수목으로 변상하여야 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민법」 제75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30.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 법률 명칭 변경에 의하여 개정

- “반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게 되면 반환여부가 재량인 것처럼

보이므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반환하도록 규정함

-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관람자에게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

■ 주요내용

- 관람료의 면제(안 제4조제6항, 제8항)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유족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유족
- 관람료 등의 반환(안 제8조) 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변상책임(안 제11조) 삭제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시설물이나 수목으로 변상하게 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민법」 제75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31.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반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게 되면 반환여부가 재량인 것처럼

보이므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반환하도록 규정함

- 홍길동테마파크 사용료(야영장, 오토캠핑장 등)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용료의 반환(안 제9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별표 1 홍길동테마파크 사용료(야영장, 오토캠핑장 등) 인상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32. 2017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에 의해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 천원)

부 서	출연기관	2017년 출연금	사업내용	관련법령
계	3개 기관	1,948,076		
고용투자정책과	나노바이오센터	240,000	창업보육 및 기업유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지역전통산업 기업 지원 등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부 서	출연기관	2017년 출연금	사업내용	관련법령
재 무 과	한국지방세 연구원	3,076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 필요 연구·조사·교육 등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평생교육센터	(재)장성장학 회	1,698,000	인재 발굴양성 및 교육기반 마련 등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000	인재 발굴양성 및 교육기반 마련 등 (교육책자 판매대금)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33. 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의하며 파손 및 분실 등 손해배상 부분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항 삭제코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2항 삭제
 -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함.

▪ 법적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34. 장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사도의 구조 기준을 면도 또는 이도의 기준 이하로 완화하여 영세 사업자 등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 2015. 10. 25. 시행)
- 주요내용
 - 사도의 구조(안 제2조)
 -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구조를 갖추도록 함. 다만,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선평은 4m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사도의 관리(안 제3조)
 -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토록 함.
- 법적근거
 -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35.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고,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삭제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4조, 제7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세부용도를 조례로 규정하여 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본 원칙을 반영하여 기금 안정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 변경(안 제6조제1항)

-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의 명칭을 “방재시설의 설치”로 변경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확대

- 위원회의 심의사항(안 제11조)

- 심의사항에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고, 기금의 중요사항을 군수가 심의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정비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36. 장성군 지진지패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에 근거없는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

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용범위(안 제3조)

-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는 강제 조항 삭제

○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안 제10조)

- 보험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그 주체를 장성군본부장으로 명시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진발생시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 요령 표준(안)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37. 장성군 희망일자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수탁자의 시설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례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함

○ 「민법」상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내용을 따르는 경우는 조례에서 따로 정할 실익이 없음

▪ 주요내용

○ 수탁의무자의 의무 (안 제10조 제4호)

- (현행)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변제의 책임을 질 것.

- (개선)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할 것.

▪ 법적근거

○ 「민법」 제394조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38.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안 제9조의2)

-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2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명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일부 문구 변경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법적근거

○ 「주차장법」 개정(2016. 1. 16.)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39.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주차장법」의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 규정과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재원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財源)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도시계획세,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주차장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부분이 삭제되어야 하고,
- 「지방세법」·「도로교통법」에 의한 세입 등의 부분을 조례에 반영
※ 조례 제5호~11호 삭제,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제5호~제8호 반영

▪ 법적근거

- 「주차장법」 개정(2016. 1. 16.)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40.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가능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해야 함(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음)

▪ 주요내용

- 제16조(손해배상) : 삭제

- (현행) ①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등에 의한다.

- (변경) : 삭제

- 법적근거

- 「민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41.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약칭 용어 정의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 관련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 대행에 필요한 사항 등 관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약칭 용어 정의(법 제1조), (안 제1조~제3조)

- 군민의 책무(법 제7조), (안 제4조4항)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위탁(법 제14조제2항)
(안 제6조의2,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2항)

- 생활폐기물 적절배출을 위한 조치(법 68조), (안 제9조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 수수료 등(법 제6조), (안 제27조제1항제1호)

- 종량제 봉투 제작·유통·판매 대행 등에 관한 규정(법 제14조7항)
(안 제15조~제20조)

-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자의 지정 등

- 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안 제15조)
- 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자의 지정 등(안 제16조)
- 다. 쓰레기 봉투 판매자의 의무(안 제18조)
- 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자의 지정 취소(안 제19조)
- 마.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제20조)
- 바.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제27조)
- 사. 수수료 감면(안 제28조)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42.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상 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식품접객업종과 휴게
음식점의 종류를 지정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문
변경 등 관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조문 변경(안 제2조제3호)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안 제9조제1항)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안 제19조제2항)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43.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식품영업 허용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

- 조례 제정 목적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용어 정의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그 밖에 장성군수가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2제9호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44.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안 제6조)
 - 가로수 기본계획을 고려한 수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조성 협의 등(안 제7조)
 -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 식재규격 및 기준(안 제8조)
 - 도로의 보도 폭에 따른 식재규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비용부담(안 제10조)
 - 가로수 관리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법적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45.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법제처)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5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임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조례에서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임의로 두는 것은 상위법령 근거 없는 권리 사항 규정임.

▪ **주요내용**

- 위원회 연임횟수 제한 삭제(안 제6조1항)
 - 현 행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개 정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 제한 없음.

▪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5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46.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법률 제13372호, 2015. 6. 22.)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안 제63조의3)

▪ **법적근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47.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 2. 3.) 및 시행(2016. 8. 4.)에 따른 전부개정
 - 법률적 공백 최소화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노력
 - 빠른 조례 반영, 법률 취지에 따라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
 -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이바지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법률명 반영
 -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 ⇒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하고, 5년마다 재검토 후 정비 가능
 -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위원장 포함 15인 내외)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등 심의·자문 기능
 -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시 협의 및 가이드라인 수립
 - 각종 사업추진 시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사전 검토 및 협의
- 법적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48.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

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안 제2조)

- 군에 배분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간판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안 제5조)

-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사업계획 및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기금 결산(안 제8조)

-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 등

▪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49.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정계시대 수탁자 선정 절차 및

수수료 반환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함.

■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사전경유제 관련 조항 신설(안 제3조제4항)
- 교통신호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도 전자게시대 설치 가능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자 선정시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 준수 조항 신설(안 제19조제2항)
- 수수료 반환 단서 신설(안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내 인용법명 및 어구 등 개정
-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조항 삭제

■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50.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1. 14.

■ 발 의 자 : 임동섭 의원 외 7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농·축·임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조성(안 제3조, 제4조)

- 농산물 최저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2021년까지 50억원 이상을 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군수)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지원대상 농산물 지원범위 및 차액지원 대상 농가(안 제14조, 제15조)

- 지원대상 품목과 지원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관내에 2년 이상 거주 실제 경작하는 농가가 대상이며 위탁 및 계열사육 농가는 제외

○ 최저가격 결정(안 제17조)

-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

○ 차액지원(안 제19조)

- 차액 지원금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금 총액의 20%를 초과 집행할 수 없음(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가능)

▪ 법적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51.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률의 조항을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계획에 의거 공동마케팅을 통합마케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문조항 변경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계획에 의거 365생 브랜드 사용 신청자격은 공동마케팅 단체에서 통합마케팅 단체로 명칭 변경
 - [별표 1] 제1호 공동브랜드 사용범위인 쌀, 사과, 배, 감(단감, 대봉), 토마토(방울, 칼라, 완숙)을 삭제하여 사용 품목을 한정하지 않음
- 법적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52.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서 약칭 삭제(안 제1조)

- 제13조(책임 및 변상) 제3항에서 규정한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 삭제
- 제26조 중 인용규정인 「장성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로 변경
- 법적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53.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안(계속비사업)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4,300백만원(국비 70% + 군비 30%)
 - 계속사업비 : 4,300백만원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4,300	
2016년	516	·기본계획, 경관계획, 실시설계, 지역역량강화
2017년	643	·복합센터 토지매입, 지역역량강화
2018년	1,743	·복합센터 건립, 지역역량강화
2019년	1,398	·면사무소 주차장 확충, 중심가로 보도·간판정비, 지역역량강화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5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발의일자 : 2016. 12. 06.

▪ 발 의 자 :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 주요내용

- 기 간 : 2016. 11. 24. ~ 12. 1. / 8일

※ 보고서 작성 및 채택 : 2016. 12. 06. / 1일

-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 대상사무 : 장성군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 대상기관 : 12개실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1읍면

- 감사반 편성 운영

상임위별	감사위원 명단	보조자
행정자치 위원회	○ 반장 : 김상복 위원장 ○ 반원 : 김행훈, 김희식, 임동섭, 김옥, 차상현	•전문위원 김종수 외 4명
산업건설 위원회	○ 반장 : 고재진 위원장 ○ 반원 : 차상현, 김희식, 임동섭, 김옥, 김행훈	•전문위원 박석호 외 4명

- 감사 추진일정

일시	구분	감사대상기관	장소	비고
11.28.(월) 10:00	행정 자치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실·과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상임위원회회의실	
11.29.(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과·소, 11개 읍·면 - 총무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읍·면 	〃	

일시	구분	감사대상기관	장소	비고
11.30.(수) 10:00	산업 건설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실·과 - 재난안전실,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산림편백과 	상임위원회실	
12.1.(목)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과·소 - 경관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	

- 감사 지적 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 34건(개선 3, 권고 30, 건의 1)
- 산업건설위원회 : 49건(개선 2, 권고 44, 건의 3)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6. 12. 06.)

55.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제출일자 : 2016. 11. 21.
- 제출자 : 장성군수
- 심사결과
 - 세입 : 350,170,000천원
 - 가. 삭감 : 해당없음
 - 나. 증액 : 해당없음
 -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심사결과			
		세입			인정액
		삭감액	증액	순삭감액	
계	350,179,000	-	-	-	350,179,000
일반회계	336,006,000	-	-	-	336,006,000
특별회계	14,173,000	-	-	-	14,173,000

-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 세 출 : 350,179,000천원

가. 삭 감

- 1) 일반회계 : 3,027,721천원
-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 1) 일반회계 : 3,027,721천원
-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50,179,000	3,027,721	3,027,721	0	350,179,000
일반회계	336,006,000	3,027,721	3,021,721	0	336,006,000
특별회계	14,173,000	0	0	0	14,173,000

라. 삭감조서

- 1) 일반회계

(단위:천원)

페이지	예산 과목	사 업 명	요 구 액	삭 감 액	인 정 액
	계	건	4,662,221	3,027,721	1,634,500
150	201-01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20,000	20,000	-
150	401-01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안전시스템 구축	79,000	79,000	-
154	401-01	장성호 제방 옐로우시티 홍보문안 설치	400,000	400,000	-

페이지	예산 과목	사 업 명	요 구 액	삭 감 액	인 정 액
174	401-01	하천 유희지 꽃길조성	100,000	100,000	-
174	401-01	황룡강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	800,000	800,000	-
193	201-01	장성군 야생화 사진첩 제작	15,000	15,000	-
207	401-01	동네체육시설 설치	120,000	60,000	60,000
222	307-03	보훈단체 운영지원	52,000	4,000	48,000
262	401-01	청소년수련관 경관조성공사	50,000	50,000	-
283	402-02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500,000	100,000	400,000
287	401-01	LED 가로등 설치 및 교체	300,000	150,000	150,000
294	101-04	실버환경감시원 인건비	36,721	36,721	-
343	401-01	경관개선사업 추진	400,000	200,000	200,000
344	401-01	지하차도 보수보강사업(재포장 등)	360,000	40,000	320,000
347	401-01	장성역광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500,000	500,000	-
348	401-01	장성군 미래조형물 디자인 설계 및 설치사업	300,000	150,000	150,000
364	401-01	황룡강전망대기본계획수립용역	18,000	18,000	-
384	401-01	의회청사신축타당성및기본계획수립용역	55,000	55,000	-
538	401-01	경관작물 단지조성	200,000	100,000	100,000
623	401-01	홍길동테마파크시설물보수	356,500	150,000	206,500

마. 증액조서

1) 일반회계

(단위:천원)

페이지	예산 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인정액
	계			3,231,442	5,956,442
142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3,027,21	3,027,721
142	801-03	내부유보금	-	2,928,721	2,928,721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4차 본회의 / 2016. 12. 16.)

56. 201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 제출일자 : 2016. 11. 21.
- 제출자 : 장성군수
- 심사결과
 - 수입 : 6,929,053천원
 삭감액 조서 : 해당없음
 - 지출 : 6,929,053천원
 삭감액 조서 : 해당 없음
 - 기금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기금별	운용요구액	심사결과				인정액
		수입 삭감액	지출			
			삭감액	증액	순삭감액	
계	6,929,053	0	0	0	0	6,929,053
재난관리기금	1,563,433					1,563,433
체육진흥기금	698,288	0	0	0	0	698,288
사회복지기금	3,485,389	0	0	0	0	3,485,389
폐기물주민지원	1,113,138	0	0	0	0	1,113,138
식품진흥기금	68,805	0	0	0	0	68,805

- 증액 : 없음
 증액 및 감액 조서 : 해당 없음
- 예치금 : 6,506,828천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4차 본회의 / 2016. 12. 16.)

57.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16. 12. 06.
- 제출자 : 장성군수
- 심사결과
 - 세입 : 380,179,558천원
 - 가. 삭감 : 해당없음
 - 나. 증액 : 해당없음
 -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심사결과			
		세입			인정액
		삭감액	증액	순삭감액	
계	380,179,558	-	-	-	380,179,558
일반회계	365,186,749	-	-	-	365,186,749
특별회계	14,992,809	-	-	-	14,992,809

-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 세출 : 380,179,558천원
- 가. 삭감 : 해당없음
- 나. 증액 : 해당없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4차 본회의 / 2016. 12. 16.)